대전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 안 번호 364

제출년월일: 2008. 6. 23.

제 출 자:대전광역시교육감

1. 제안 이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법률 제7974호, 2006. 9. 22)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953호, 2007. 3. 23)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같은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규정 신설(안 제2조)

- 1) 학원·교습소 수강생들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등 가입금액 최저기준을 정함.
 -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다만, 1인당 의료실비 배상금액은 3천 만원 이상)
- 2) 학원·교습소 수강생들에 대한 체벌금지 등 인권보호 규정 신설

나. 학원시설 일반적인 기준 신설(안 제3조)

- 기존 시행령 제8조에 규정되어 있는 학원시설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에 일반적인 기준을 신설함.(안 제3조)

다. 학원 단위시설 기준 등 신설(안 제4조)

- 1) 학원 강의실 일시수용인원 기준 상향 조정 학생의 체격증가 및 강의실 환경 개선 등을 고려하여 강의실 일시 수용인원 기준을 1제곱미터 당 1.2인 이하에서 1인 이하로 상향 조정함.
- 2) 열람실 및 실험 실습실의 단위면적 기준
 - 열람실은 60제곱미터이상으로 하되, 1제곱미터 당 수용인원을 0.8인 이하로 하고, 좌석은 남녀별로 구분하여 배열하도록 함.

- 남녀별 좌석 구분 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사용할 수 있음.
- 실험·실습실의 단위면적은 4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며, 다만, 실습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사용할 수 있음.
- 3) 학원의 환경 기준 등 신설 학원의 교육환경, 보건 위생 등을 개선하기 위해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과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을 정함.
- 4)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기준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 설과 소방 관계법령이 정한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함.

라. 학원 교습과정별 시설·설비 기준 신설(안 제5조)

- 1) 학원의 종류가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구분됨에 교습과정별로 재분류 (별표 3, 별표 4 참고)
- 2) 법 시행령 개정으로 삭제된 교습과정에 대한 시설·설비·교구 기준을 삭제하고, 신설된 교습과정과 기존 교습과정 중 개정이 필요한 교습과정의 시설·설비·교구 기준 마련

마.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기준 설정(안 제6조)

- 1) 제한적 설립취지를 반영한 학원시설 등록 기준 마련 법률의 제한적 설립취지에 따라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난립 방지와 수강생의 안전·위생·보건 관리를 위하여 엄격한 시설·설비 등의 등록 기준 설정(별표5 참조)
- 강의실 : 230제곱미터 이상
- 보건실 : 33제곱미터 이상
- 체육시설(체육장): 100제곱미터 이상(외부체육장은 학원건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여야 함) 등
- 2) 수강생들의 생활지도 및 보건·위생 관리를 위해서 숙박시설의 위치를 강의실이 속해 있는 동일한 건물이거나 학원 건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도록 하고, 숙박시설에는 생활지도 담당인력 1인 이상(남·여 수강생이 있을 경우 각각 1명 이상)을 배치토록 의무화 함.

3) 급식시설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집단 급식소로 신고토록 하고 영양 사 배치를 의무화 함.

바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 등록 제한(안 제7조)

- 1) 법률의 제한적 설립취지에 따라 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을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 등록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2) 심의위원회는 교육감 소속하에 두며,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사. 교습과정별 일시수용능력인원수 산정 구체화(안 제8조)

[별표 4]로 정하여져 있던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교습과정별 반당 정원은 대부분이 1.5제곱미터 당 1인 이하이고, 자동차, 음악, 무용 교습과정 등 일부교습과정만 기준이 다르므로 표를 삭제하고 표의 내용을 제8조의 법문으로 표기함. [1.5제곱미터당 1인 이하로하되, 자동차 교습과정 중 중기운전의 운전실습장은 30제곱미터당 1인 이하, 음악교습과정 중 피아노실습실은 3제곱미터당 1인 이하, 전통무용 또는 무용 교습과정의 실습실은 2.3제곱미터당 1인 이하로 한다. 단, 별표4에 열거되지 아니한 교습과정별 일시수용능력 인원에 대하여는 유사한 교습과정을 준용한다]

아. 교육장이 수강료 등을 조정할 경우 학원 등으로부터 관계 증빙 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붙임

나. 기타

1) 입법예고 : 완료

2) 부패영향평가: 적정

3) 규제심사 : 심의완료

4) 법제심사 : 심의완료

5) 예산조치 : 해당없음

대전광역시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학원의 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①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교습소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 등에의 가입 금액은 사망, 상해, 후유장애 등에 대하여 1인당 배상금액을 1억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1인당 의료실비 배상금액은 3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 ②제1항의 배상범위는 학원·교습소의 내·외에서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의 관리·운영하에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 ③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학원설립·운영자 등은 「교육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 등에서 교습 또는 그 밖의 목적을 이유로 학습자에게 과도한 신체·정신상의 활동제약 및 처벌 행위를 할 수없으며, 건강을 위하여 교습시간을 적정하게 안배하는 등의 노력을 기

울여야 한다.

- ⑥부모 등 보호자는 그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원 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원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 제3조(학원시설) ①학원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되, 그 목적을 실현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1. 강의실 또는 열람실(영 제3조의2제1항 별표1의 특수교육분야 학원의 경우에는 개별실 또는 집단실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강의와 실험·실습·실기 등을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행하는 학원의 경우에는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2.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에 있어서는 보건실, 휴게 실 및 체육시설 또는 체육장
 - 3.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에 있어서는 이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4. 화장실·급수시설
 - 5.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 6. 그 밖에 교습 및 학습에 필요한 교구 및 설비
 - ②학원은 학습자의 편의제공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 1. 학습자료실
 - 2. 상담실
 - 3. 체육시설·오락시설·기타 편의시설
 - 4. 보건위생상 필요한 시설 및 설비
- 제4조(단위시설의 기준) 법 제8조의 단위시설별 기준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강의실 : 강의실 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 150제곱미터(학교교과교습학

원의 경우에는 85제곱미터)이하로 하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1인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교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카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 2. 열람실: 열람실은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0.8인 이하가 되도록 하고, 남녀별로 좌석이 구분되도록 배열할것. 다만, 남녀별 좌석 구분 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 3. 실험·실습실 : 실험·실습실의 단위면적은 45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실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 4. 급수시설 및 화장실: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1과 같다.
- 5.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 : 환기·채광·조명·온습도 의 조절기준은 별표2와 같다.
- 6.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과 소방 관계법령이 정한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5조(교습과정별 시설기준)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습과정별 학원의 시설 규모는 별표3과 같다.
 - ②제3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는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은 원칙상 이론 강의가 실험·실습·실기 등에 비하여 적게 운영되는 학원을 말한다.
 - ③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중 오락시설 및 편의시설은 사행심을 조장하는 시설이 아니어야 한다.

- ④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규모 및 교구·설비 기준은 별표4와 같다. 다만, 별표4에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교습과정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제출한 설비 및 교구가당해 교습과정 운영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별표4의 기준으로 본다.
- 제6조(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기준) ①영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교습을 제한한다.
 - ②영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숙박시설의 위치, 환경기준, 시설·설비기준, 영양사 및 생활지도담당인력의 배치기준 등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숙박시설의 위치는 학원과 동일한 건물이거나 학원 건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 2. 숙박시설의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및 냉·난방시설은 보건·위 생적으로 적절한 것이어야 하고,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생활소 음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3. 숙박시설의 시설·설비 기준은 별표5와 같다.
 - 4. 숙박시설에는 소방 관계법령이 정한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5. 숙박시설의 화장실 및 급수시설은 학원의 규모에 따라 적절한 것이어 야 하며, 화장실은 남녀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6. 숙박시설의 급식시설은 「식품위생법」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여야 하며, 영양사 1인을 배 치하여야 한다.

- 7. 숙박시설에는 생활지도담당인력을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남녀 수강생이 있을 경우 각각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 제7조(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제한) ①대전광역시교육 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숙박시설의 필 요성 등을 고려하여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 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을 제한할 경우에는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 등록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제2항에 의한 심의위원회는 교육감 소속하에 두며,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교습과정별 일시 수용 능력인원)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험실습 또는 실기를 필요로 하는 학원에서 같은 교습과목을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교습받을 수 있는 학습자의 수는 1.5제곱미터당 1인 이하로 하되, 자동차 교습과정 중 중기운전의 운전실습장은 30제곱미터당 1인 이하, 음악교습과정 중 피아노실습실은 3제곱미터당 1인 이하, 전통무용 또는 무용 교습과정의 실습실은 2.3제곱미터당 1인 이하로 한다. 다만, 별표4에 열거되지 아니한 교습과정별 일시수용능력 인원에 대하여는 유사한 교습과정을 준용한다.
- 제9조(강사 등의 채용 및 해임통보) ①영 제5조의2 및 영 제12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사, 영양사 및 생활지도담당인력을 채용한 때에는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관할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학원에서 강사, 영양사 및 생활지도담당인력을 해임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관할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허용되지 않는 교습과정) 교습과정이 신체의 안위에 직접 관계되거나 민속고유의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학원 및 교습소는 설립할수 없다.
- 제11조(분류되지 아니한 교습과정의 운영) 영 제3조의2 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된 계열별 교습과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의 시설기준정원운영 등에 관하여는 별표4의 교습과정 중 그와 유사한 과정의 시설기준정원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 제12조(수강료 등의 금액 통보) ①영 제7조제2항 및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수강료 등을 그 시행일 10일 전까지 관할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교육장이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료 등을 조정할 경우에는 학원 등으로부터 관계 증빙서류를 징구하여 검토할 수 있다.
- ③통보된 수강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다. 제13조(행정처분 기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행정처분의 대상, 기준,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1. 행정처분의 종류는 시정명령,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또는 폐지로하되, 교습 정지, 시정명령의 경우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2. 행정처분은 위반 사항의 경중, 위반정도 및 반복 위반 횟수 등을 기준으로 한다.
 - 3.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학습자에게 끼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행정처분의 시기, 종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제14조(우수학원의 지정육성) 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우수학원을 지정·육성할 수 있다.

제15조(학원시설을 활용한 평생교육 진흥) 학원설립운영자는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에 기여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시설을 활 용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학원설립·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시설·설비 기준에 의하여 설립·등록된 학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등록 된 것으로 본다.
 - ②이 조례 시행당시 설립·등록 또는 교습과정 변경 등이 진행 중에 있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3조(교습과정 변경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록된 학원의 교습과정에 대하여는 영 제3조의2 별표1에서 정한 교습과정으로 본다. 다만,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과정을 운영하고 있거나,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후 2월 이내에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변경 등록하여야 한다.
 - ②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변경 등록된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후 3년간 영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을 하지 않았거나 제2조의

개정 규정에서 정한 배상기준 금액 미만으로 가입한 학원 및 교습소는 이 조례 시행 후 2월 이내에 같은 조에서 정한 배상기준 금액 이상으로 가입하거나 추가 가입하여야 한다.

제5조(특수교육분야 학원 설립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사설특수교육실 등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6월 이내에 특수교육분야 학원으로 설립·등록하여야 한다.

【별표1】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

(제4조 제1항 제4호 관련)

- 1. 화장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되, 수강생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위치 할 것
- 2. 대변기 및 소변기는 수세식으로 할 것(상·하수도시설의 미비 또는 수질오염 등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외한다)
- 3. 대변기의 칸막이 안에는 소지품을 두거나 옷을 걸 수 있는 설비를 할 것
- 4. 화장실 안에는 손 씻는 시설과 소독시설 등을 갖출 것
- 5. 화장실은 항상 청결히 유지되도록 청소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별표2】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제4조 제5호 관련)

1. 환기

- 가. 환기의 조절기준
 - 환기용 창 등을 수시로 개방하거나 기계식 환기설비를 수시로 가동하여 충분한 환기량이 유입되거나 배출되도록 할 것
- 나. 학원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분포를 균등하게 하여 실내공기의 순환이 골고루 이루어지도록 할 것
- 다. 중앙관리방식의 환기설비를 설치할 경우 환기닥트는 공기를 오염 시키지 아니하는 재료로 만들 것

2. 채광(자연조명)

- 가. 직사광선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천공광에 의한 옥외 수평조도와 실내조도와의 비가 평균 5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최소 2퍼센트 미만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나.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10대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다. 강의실 바깥의 반사체로부터 눈부심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조도(인공조명)

- 가. 강의실의 조명도는 책상면을 기준으로 30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나. 최대 조도와 최소 조도의 비율이 3대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다. 인공조명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실내온도 및 습도

- 가. 실내온도는 섭씨 18도 이상 28도 이하로 하되, 난방온도는 섭씨 18도 이상 20도 이하, 냉방온도는 섭씨 26도 이상 28도 이하로 할 것
- 나. 비교습도는 3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로 할 것

[별표3] 학원의 시설규모(제5조 제1항 관련)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	
		`	입시종합	230㎡ 이상	
	입시·검정		검정고시 입시단과	150㎡ 이상 90㎡ 이상	
	및 보습	보통교과	보 습	90m² 이상	
			숙박시설을 갖춘학원	별표5와 같음	
	국제화	외국어	실용외국어	150m² 이상	
학교교과	예 능	예 능	음악, 미술, 무용	별표4와 같음	
교습학원	독서실		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탄 대상으로 하는 독서실	"	
	특수교육	특수교육	특수교육	11	
	기타		컴퓨터, 주산, 실용음악, 성악, 현대무용	11	
		기타	부기, 속독, 속셈, 웅변	90m² 이상	
			기타 과정	60m² 이상	
	직업기술 <u>긴</u>	산업 산업 ^건 직업기술 문 간보	간보보조기술	전과정	별표4와 같음
				거서 기무리기	주 산
		경영 · 사무관리	기타 과정	90m² 이상	
평생직업 교육학원	국제화	국 제	성인대상 어학, 통역, 번역	150m² 이상	
12470			대학편입	60m² 이상	
	인문사회 인	인문사회	행정, 경영, 회계, 통계	90m² 이상	
			성인고시	150m² 이상	
	ગોલી	기예	화술, 웅변	90m² 이상	
	기예		기타 과정	별표4와 같음	
	독서실	학교교과교습학	l원 교습과정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별표4와 같음	

비고 :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교습과정의 학원에 있어서는 "별표4"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규모 및 교구·설비기준"의 시설규모에 의한다.

【별표4】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

가. 학교교과교습학원

교 습 과 정	시 설 규 모 및 교 구·설 비 기 준	비고
1.음악	 가. 시설 음악실 9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공통기준 감상용 전축(채널당 출력 20W이상) 1대 이상 2)과정별 기준 가)악기과정 ①□□나□□목(1)의 공통설비 및 교구 ②주요실습용 악기 5대 이상 나)성악과정 ①□□나□□목(1)의 공통설비 및 교구 ②현대성악: 피아노 1대 이상 ③고대성악: 장고, 가야금, 피리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미술	가. 시설 실습실: 9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화판 및 화판걸이(이젤)일시수용인원 1인당 1개 이상 2)서양화 과정: 석고 및 석고대 10점 이상 3)동양화 과정: 벼루, 모포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무용일반 (전통무용,현대무용)	가. 시설 1)무용실: 60㎡ 이상 2)탈의실: 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전축, 녹음기 1대 이상 2)대형거울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독서실	가. 시설 열람실 9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열람대 1인당 1대 (열람대 넓이는 가로 78cm이상, 세로 58cm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	시 설 규 모 및 교 구·설 비 기 준	비고
5.특수교육	가. 시설 개별실 6.6㎡ 이상 또는 집단실 20㎡ 이상 나. 교구 언어치료, 작업치료, 청능훈련, 물리치료, 감각운동, 지각훈련, 심리행동 적응훈련, 보행훈련, 일상생활훈련 등 치료교육 과정별 필요교 구 3종 이상	
6. 컴퓨터	가. 시설 실습실: 9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컴퓨터 10대 이상(일시수용인원 1인당 1대) 2) 주변기기 3) 관련소프트웨어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7. 주산	 가. 시설 실습실: 9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대형주판 2개 이상 2)속도측정 초시계 2개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8. 실용음악	가. 시설 실습실: 9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교습과목별 악기 5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9. 성악	가. 시설 실습실: 9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음향기기 1대 이상 2)피아노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교 습 과 정	시 설 규 모 및 교 구·설 비 기 준	비고
	가. 시설 1)실습실: 60㎡ 이상 2)탈의실 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음향기기 1대 이상 2)대형거울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나. 평생직업교육학원

교습과정	시 설 규 모 및 교 구설 비 기 준	비고
1.기계 (기계공작,기계정비)	가. 시설 1)실습실: 60㎡ 이상 2)강의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공작기계 2대 이상 2)드릴머신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기계 (기계제도·기계설계)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만능 제도기셋트 1인당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기계 (용접,배관,판금)	가. 시설 1)실습실: 60㎡ 이상 2)강의실: 60㎡ 이상 나. 과정별 설비 및 교구 1)용접과정 가)산소용접기 2셋트 이상 나)전기용접기 3셋트 이상 다)특수용접기 1셋트 이상 라)디스크 그라인더 1대이상 2)배관과정 가)산소용접기 1셋트 이상 나)전기용접기 1셋트 이상 나)전기용접기 1셋트 이상 다)파이프바이스 5대 이상 라)파이프 커터 5개 이상 마)파이프 렌치 5개 이상 바)작업대 2조 이상 (3)판금과정 가)유압 또는 진동절단기 1대 이상 나)벤딩 머신 1대 다)핸드시어 5개 이상 라)산소 또는 전기용접기 2셋트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기계 (냉난방·열관리)	가. 시설 1)실습실: 60㎡ 이상 2)강의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보일러 4종 이상 2)보일러 부속장치 3)버너 4대 이상 4)가스 분석기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교 습 과 정	시 설 규 모 및 교 구설 비 기 준	비고
5.기계 (냉동기계,냉동가스)	가. 시설 1)실습실: 60㎡ 이상 2)강의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냉동유니트 2대 이상 2)분해조립형, 개방형 압축기 2대 이상 3)진공펌프(회전식 압축기) 2대 이상 4)밀폐형 압축기 3대 이상 5)증발기·응축기 3대 이상 6)작업대 3조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6·자동차 (중기운전)	가. 시설 1)운전실습장 : 990㎡ 이상 2)강의실 : 60㎡ 이상 3)기재실 : 3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중기 가동완전품 2대 이상 2)엔진체 1대 이상 3)중장비 기술교육에 필요한 시험기 및 측정기 1종이상 4)밧데리,충전기,전기배관판,삼각대,구리스 주유기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7·자동차 (자동차, 중기 및 농기구정비)	가. 시설 1)강의실: 60㎡ 이상 2)정비실습실: 60㎡ 이상 3)기재실: 30㎡이상 나. 설비 및교구 1)자동차 2대 이상 2)가솔린 기관 2대 이상 3)디젤기관 1대 이상 4)변속기 2대 이상 5)차동기 2대 이상 6)엔진 종합테스터기 1대 7)휠바란스 1대 8)휠얼라이먼트 1대 9)밧데리테스터기 1대 10)배기가스 테스터기 1대 10)배기가스 테스터기 1대 12)헤드라이트 시험기 1대 13)타이어 탈착기 1대 14)에어콘 가스주입기 1대 15)중기·농기구의 경우 해당 중기·농기구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교 습 과 정	시 설 규 모 및 교 구·설 비 기 준	비고
8.금속 (귀금속가공, 보석감정)	가.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과정별 설비 및 교구 1)보석감정과정 가)현미경 2인당 1대 나)굴절계 2인당 1대 다)보석용 (비중측정겸용) 정밀저울 1대 이상 라)편광기 2인당 1대 이상 마)분광기기 (포터블 제외) 1대 이상 바)자외선 형광반응기 1대 이상 사)이색경 2대 이상 아)각 보석류 200종 이상과 다이아몬드 20개 이상 2)귀금속가공과정 가)산소용접기 2대 이상 나)마모기 1대 이상 다)광택기 1대 이상 다)광택기 1대 이상 라)모루 2인당 1대 이상 마)압연기(전기로러) 1대 이상 바)실습대(4인용기준) 10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9.금속 (비파괴검사)	가. 시설 1) 실습실 : 80㎡ 이상 [원자력법에 의한 방사선 실습실 33㎡ 이상 포함(다만, 안전 관리상 지하실에 설치 가능)] 2) 강의실 : 30㎡ 이상 나. 과정별 설비 및 교구 1)방사선투과검사용 가)X-ray장비 1세트 (X-ray tube, 제어기, 원격조정기, 충전기, 측정기 등) 이상 나)동위원소 모형 1세트 이상 다)현상 및 판독장비(필림농도계, 필림현상기, 필림판독기, 필림건조기, 행거 등)1세트이상 ※다만, 과학기술처의 하가와 방시선 동위원소 취급(감독일반면하자 필요 2)초음과탐상검사용 가)탐상장비(초음과탐상기, 탐측자(수직, 사각)등) 1세트이상 나)표준시험편(S·T·B)A1,A2각1세트(STB-A, STB-A2, C형대비시험편등) 이상 3)자기 및 와전류탐상 검사용 가) 휴대식(Yoke형) 및 포터블형식 각1세트이상 나) Prod Type 1세트 이상 다) 전자유도 탐상장비 1세트이상 라) 표준시험편 5세트 이상 다) 전자유도 탐상검사용 가) 형광탐사(안막포함) 1세트 이상 나) 탐상제 5세트 이상 나) 탐상제 5세트 이상 다) 표준시험편 10개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교 습 과 정	시 설 규 모 및 교 구·설 비 기 준	비고
10.화공 및 세라믹(화공)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화공계측, 화학실험기, 화공장치 및 설비 등 5종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1.전기	 가. 시설 1)실습실: 60m² 이상 2)강의실: 30m²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직류기, 단상유도 전동기, 3상유도 전동기 (1/4마력 이상) 각 5대 이상 2)수전, 송전, 배전실 3)오실로스코프, 역류계, 절연저항계, 전압계, 전류계, 주파수계, 전력계 각 10대 이상 4)실험·실습대 (4-6인용) 5대 이상 5)전기공사 실습작업판 (900×1800m/m) 10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2.통신	가. 시설 실습실: 60m² 이상 나. 과정별 설비 및 교구 1)정보통신 운용과정 가)화일통합장치 (Client-server 32port이상) 1대 이상 나)하드디스크 1GB이상 컴퓨터 1대 이상 다)터미널용 컴퓨터 20대 이상 라)컴퓨터용 프린터 2대 이상 마)국가검정용 프로그램 20개 이상 바)업무용 통신프로그램 2개 이상 2)정보통신 설비과정 가)모뎀(Modem) 10대 이상 나)다중송신장치(MUX)1대 이상 다)회로시험기 10대 이상 라)오슬로스코프 1대 이상 마)주파수발진기 1대 이상 바)설비실습용 컴퓨터 10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3.전자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공통기준 가)회로시험기 2인당 1대 이상 나)신호발전기 5대 이상 다)트랜지스터수신기 10대 이상 라)녹음기 10대 이상 마)조립 및 수리실습에 필요한 공구 20조 이상 	

교 습 과 정	시 설 규 모 및 교 구·설 비 기 준	비고
	2)과정별 기준 가)전파전자과정 ①·나·목 (1)의공통 설비 및 교구 ②텔레비젼, 스위프발전기 1대 이상 ③오실로스코프 5대 이상 ④고전압계 1대 이상 ⑤TV 10대 이상 나)전자기기과정 ①.나.목(1)의 공통 설비 및 교구 다)컴퓨터기기과정 ①.나.목(1)의 공통 설비 및 교구 ②프린터 2대 이상 ③보조기억장치 2대 이상 ④컴퓨터(PC)기기 10대 이상 라)비디오과정 ①·나·목(1)의 공통설비 및 교구 ②전파전자과정의 설비 및 교구 ③VTR 10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4.조선	가. 시설 1)실습실: 60m ² 이상 2)설계실: 60m ²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선박기관 및 선체 1대 2)일반공구 20set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5.항공	가. 시설 1)실습실: 60㎡ 이상 2)강의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항공기 고정익 1대, 회전익 1대 2)왕복기관 가)수평대향형: 4기통, 6기통 각 2대 이상 나)수직대향형 1대 이상 다)성형 1대 이상 3)가스터빈기관 가)Turbo Jet 2대 이상 나)Turbo Prop 1대 다)Turbo Shaft 1대 이상 4)시험기·측정기 5종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6.토목, 건축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제도판 및 제도대 1인당 1조 2)측량기구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교 습 과 정	시설 규모 및 교구·설 비 기 준	비고
17.의복·섬유 (수예, 자수)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과정별 설비 및 교구 1)재봉기 자수과정 자수재봉기 1인당 1대 이상 2)수예, 손자수, 인형,조화과정 과정에 필요한 설비 및 교구 3)섬유과정 가) 방사 및 장적기계 설비 2종 이상 나) 정련표백, 염색가공, 실습설비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8.의복· 섬유 (양재, 한복)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미싱 5대 이상 2)마네킹 3개 이상 3)오버로크 재봉틀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9.광업자원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채광 및 탐사, 선광실습기기 3종이상 (2)화약 및 발파작업 시설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0.농림 (동물)	 가. 시설 실습실: 60m² 이상 나. 과정별 시설·설비 및 교구 1)사육과정 가)사육장: 300m² 이상 나)동물 5종 이상 2)박제과정 가)박제표본:어류,조류,갑각류 각 5점 이상 나)박제제작셋트 1인당 1셋트 이상 3)모피피혁과정 가)화공약품처리장: 15m² 이상 나)회전기,약품침전탱크전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1.농림 (낙농,종묘,농산제조)	가. 시설 1)실습실: 60㎡ 이상 2)실습지: 990㎡ 이상 나.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교 습 과 정	시 설 규 모 및 교 구·설 비 기 준	비고
22.해양(선원)	가. 시설	
	1)강의실 : 30 m² 이상	
	2)실습실 :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공통기준	
	가)실습선박(30G/T이상)1척 이상	
	나)환등기 1대 이상	
	2)과정별 기준	
	가)갑판과	
	①정박계선기구(앙카2개,양모기1개,비트1개)	
	②로푸 및 와이어로프 100m 각1개 이상	
	③나침의 및 청우계 각1개 이상	
	④구명대1대 및 소화기구 종별 각1개 이상	
	⑤수리용 공구 1식 이상	
	나)기관과	
	①디젤기관(30마력이상)1대 이상	
	②기관분해 조립용 공구1식 이상	
	③기관수리용 조립용 공구 1식 이상	
	④펌프류(원심력,기아식)각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3.에너지	가. 시설	
	실습실: 60m²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원자로 계측시설, 열관리방사선 실험기기 3종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4.환경· 오물처리	가. 시설	
	실습실 : 60m²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화공계측, 화학실험기, 화공장치 및 설비등 5종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5.공예	가. 시설	
	실습실 : 60m²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공작대 4인당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6.안전관리	가. 시설	
(소방설비)	실습실 : 60m²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도시가스 공급설비 모형 1셋트 이상	
	2)LPG 공급설비 모형 1셋트 이상	
	3)방호장치 20종 이상	
	4)보호구 5종 이상	
	5)안전기기 5종 이상	
	6)측정공구 5종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교 습 과 정	시설규모및교구·설비기준	비고
27.안전관리 (산업안전)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설비 및 교구 소방 및 가스설비, 방호장치, 보호구 및 안전기구 등 5종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8.디자인 (산업디자인)	가. 시설 1)실습실 : 60㎡ 이상	
	2)강의실 : 60m² 이상 나. 과정별 설비 및 교구 1)인테리어디자인과정	
	가)제도판 1인당 1대 이상 나)실습대(1인용) 2인당 1대 이상 다)실습용 컴퓨터 3대 이상 2)그래픽 디자인과정	
	가)실습대(1인용) 2인당 1대 이상 나)컴퓨레시 1대 이상 다)실습용 컴퓨터 2인당 1대 이상	
	3)섬유디자인과정 가)실습대(1인용) 2인당 1대 이상 나)실습용 컴퓨터 3대 이상	
	다)복사 조명대 1대이상 4)디스플레이과정 가)실습대(1인용) 2인당 1대 이상	
00 17 0	나)실습용 쇼윈도우 2인당 1대 이상 다)쇼윈도우용 마네킹 5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9.디자인 (패션디자인)	가. 시설 1)실습실: 60㎡ 이상 2)강의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디자인 제도대 2인당 1대 2)시청각 기구 1대 이상 3)에어브로쉬 1셋트 이상	
	4)모타미싱 10대 이상 5)패션 실습대 4인당 1대 6)인대(마네킹) 5대 이상 7)컴퓨터2대이상	
30.이·미용 (이용)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교구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이발의자 10개 2)증기소독기 2조 이상 3)건발기 2대 이상 4)이발기, 면도, 가위 각 10개 이상	
	5)대형거울: 이발 의자수에 상응하는 개수 6)세면장 및 급수시설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교 습 과 정	시설 규모 및 교 구·설 비 기 준	비고
31.이·미용 (미용)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공통 설비 및 교구 가)대형거울 나)세면대 2개 이상 다)작업대(4인용) 3대 이상 2) 헤어과정 가)인두(마네킹)10개 이상(일시수용인원 1인 1대) 나)드라이어 10개 이상 (") 다)파마기 10개 이상 (") 라)샴프대 2대 이상 3) 피부미용과정 맛사지 침대 2대 이상 4) 메이크업과정 메이크업 셋트 2종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 설비 및 교구	
32.이·미용 (세탁)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세탁기(대형) 1대 이상 2)다리미 10대 이상 3)실습대 4인당 1대 이상 4)건조기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3.이·미용 (분장)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분장셋트 30조 2)가발 3종 40개 3)마네킹 30개 4)수염재료 일체 5)상투류 50개 6)시청각기구 1조 7)특수분장 제조기1조 8)조명시설1조 9)분장실습대 및 의자15조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및 교구	
34.식음료품 (조리)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조리대 4인당 1대 이상 2)냉장고(1,000ℓ 이상)1대 이상 3)오븐 1대 이상 4)각 요리별로 조리대 1대당 요리에 필요한 교구 1식 이상 5)제독 시설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교 습 과 정	시 설 규 모 및 교 구·설 비 기 준	비고
35.식음료품 (제과·제빵)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빵슬라이서 1대 이상 2)수직형 믹서(중형)8대 이상 3)오븐(용량:2장)5대 이상 4)실습대 8대 이상 5)발효실(용량:40장) 1대 이상 6)추저울(5kg) 10대 이상 7)비중계, 당도계, PH 미터기, 수분측정기 각 1대 이상 8)로라(DEUGHT SHEETER) 1대 	
	9)냉장고(1,000ℓ이상)1대 이상 10)실습실당 싱크대 2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6.식음료품 (조주)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진열대 4대 이상 2)조주대 4대 이상 3)양주병 학과 식별용 200종 이상 4)양주병 실습용 진열대 1대당 30종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7.인쇄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인쇄기 2종 이상 2)활자, 활자판 기타 시설·설비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8.사진	가. 시설 1)실습실: 60㎡ 이상 2)암실 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사진기 3종 이상 2)확대기 2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9.피아노조율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정음작업대 2대 이상 2)조율튜우너, 튜링햄머 각3대 이상 3)스테이샤, 스프운밴다, 건반고르기자, 다이얼게이지 각2대 이상 4)피아노 3대 이상 다.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교 습 과 정	시 설 규 모 및 교 구설 비 기 준	비고
40.컴퓨터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컴퓨터 10대 이상(일시수용인원 1인당 1대) 2) 주변기기 3) 관련소프트웨어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1. 소프트웨어,인터넷	가. 시설 실습실: 9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컴퓨터 10대 이상(일시수용인원 1인당 1대) 2)주변기기 3)관련 소프트웨어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2.간호조무사	가. 시설 1)강의실: 60m' 이상 2)실습실: 60m'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인체모형 1개 이상 2)인체해부 및 생리궤도 각1부 이상 3)시력 및 색각표 각1부 이상 4)신장 및 체중계 각1개 이상 5)주사기 20종 이상 6)소독기 중형 1개 이상 7)혈압계, 청진기 8)침대 2개 이상 9)흡입기(Suction) 1개 이상 10)휠체어 1대 이상 11)주사 실습용 인체모형 12)인공배뇨셑 13)기관절개관(Cunnula kit)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3.영상	 가. 시설 1)강의실: 30㎡ 이상 2)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베타믹스용 VTR 5대 이상 2)VHS용 VTR 5대 이상 3)U-메타 VTR 5대 이상 4)VTR 카메라 10종 이상 5)8mm릴테프등 5종 이상 6)TV수상기 10대 이상 7)조명기구 10종 이상 8)간이 편집기 자막기 3종 이상 9)오디오 더빙용 오디오set5종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4.영화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과정별 시설·설비 및 교구 1)현상실 10㎡ 이상 2)녹음실 15㎡ 이상 3)촬영기 및 영사기 각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교 습 과 정	시 설 규 모 및 교 구·설 비 기 준	비고
 45.방송	가. 공통시설	
	강의실 : 60㎡ 이상	
	나. 기본 시설·설비 및 교구	
	1)부조정실	
	가)기재실 : 45m² 이상	
	나)설비 및 교구	
	①영상조정기(VIDEO MIXER UNIT) 1대	
	②음향조정기(AUDIO MIXER UNIT) 1대	
	③동기신호발생기(SYNCGENERATOR) 1대	
	④파형감시기(WAVEFORM MONITOR) 1대	
	⑤방송용 녹음기(TAPE RECORDER)1대 이상	
	⑥영상위상감시기(VECTOR SCOPE) 1대	
	⑦고화질 녹화기(S·VHS) 1대 이상	
	⑧영상 및 음향감시기(VIDEO & ALDIO MONITOR) 8대 이상	
	⑨편집기(EDITOR)1대1 또는 2대2 1대	
	2)스튜디오	
	가)기재실 : 60㎡ 이상	
	나)설비 및 교구	
	①고화질 카메라(BETACAM CAMERA)	
	또는 고화질 카메라(S·VHS CAMERA)2대 이상	
	②조명기기(LIGHT, 1kW 이상) 5대 이상	
	③영상 및 음향감시기(VIDEO & AUDIO MONITOR)1대 이상	
	3)방송실습제작실	
	가)S·VHS 편집실	
	①기재실 : 30m² 이상	
	②설비 및 교구	
	②방송용 영상조정기(SWITCHER)1대	
	①방송용 음향조정기(AUDIO CONSOL)1대	
	(의 항 등 등 등 조 등 기(NODIO CONSOL) 1대 (의 방송용 녹화기(S·VHS)1:1 2대 이상	
	®방송용 영상보정기(LINE PROCESSOR) 1대 이상	
	®방송용 색상보정기(COLOR CORRECTOR) 1대 이상	
	변항송용 영상감시기(VIDEO MONITOR) 1대 이상	
	나)베타캄 편집실	
	①기재실 : 30㎡ 이상	
	②설비 및 교구	
	①방송용 영상조정기(SWITCHER)1대	
	④방송용 음향조정기(AUDIO CONSOL)1대	
	또방송용 영상감시기(VIDEO MONITOR)1대 이상	
	환방송용 녹화기(S·VHS) 1:1 2대 이상	
	⑩방송용 영상보정기(LINE PROCESSOR) 1대 이상	
	ঞ방송용 색상보정기(COLOR CORRECTOR) 1대 이상	
	* S·VHS 편집실과 (나)베타캄편집실 중 선택	
	I and the second se	

교 습 과 정	시 설 규 모 및 교 구·설 비 기 준	비고
	다)녹음설 ①기재실 ②녹음조정실 30㎡ 이상 (약녹음 스튜디오 30㎡ 이상 ②설비 및 교구 ②방송용 음향조정기(AUDIO MIXER UNIT) 1대 ①방송용 음향소정기(REEL DECK) 1대 이상 ②방송용 음향소정기(REEL DECK) 1대 이상 ④방송용 녹화기(VTR) 1대 이상 ④방송용 녹화기(VTR) 1대 이상 ④방송용 는향본생기(ECHO) 1대 이상 ④방송용 음향증폭기(P-A-AMP) 1대 이상 ④병송용 음향강정기(SPEAKER) 2대 이상 ④정상음반기(COMPUTOR DISK ELECTRIC GRAPHIC) 1대 ④망송용 음향가정기(SPEAKER) 2대 이상 ④정상음반기(COMPUTOR DISK ELECTRIC GRAPHIC) 1대 ④ROMPACT DISK 1대 ④망송용 음반작동기(TURN TABLE) 1대 라)여왕화왕비 ①방송용 취재용 환영기(ENG CAMERA) 3대 이상 ③방송용 건전지 조명기(SUNGUN) 1대 이상 ⑤방송용 건전지 조명기(SUNGUN) 1대 이상 다.과정별 시설설비 및 교구 1)종합과정 가)□□가□□목의 공통시설 나)□□나□□목증(3)의 (다)를 제외한 시설설비 및 교구 로)방송제작과정 가)□□가□□목의 공통시설 나)□□나□□목증(3)의 (다)를 제외한 시설설비 및 교구 2)방송제작과정 가)□□가□□목의 공통시설 나)□□나□□목증(3)의 (다)를 제외한 시설설비 및 교구 다)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방송기술과정 가)□□가□□목의 공통시설 나)□□나□□목증(3)의 (다)를 제외한 시설설비 및 교구 5)무대미술(무대문장 포함)과정 가)□□가□□목의 공통시설 나)□□나□□목의 (1)・(2) 및(3)의 (다)・(라)의 시설・설비 및 교구 5)무대미술(무대문장 포함)과정 가)□□가□□목의 및 "나□□목의 시설설비 및 교구 5)무대미술(무대문장 포함)과정 가)□□가□□목의 및 "나□□목의 시설설비 및 교구 5)무대미술(무대문장 포함)과정 가)□□가□□목및 "나□□목의 시설설비 및 교구 5)무대미술(무대문장 포함)과정 가)□□가□□목의 등장시설	

교 습 과 정	시 설 규 모 및 교 구·설 비 기 준	비고
	6)편집과정 가)□□자□□목의 공통시설 나)□□나□□목이) 및 (3)의 (7)) 또는 (나)의 시설설비 및 교구 7)촬영·영상과정 가)□□자□□목의 공통시설 나)□□나□□목이(1)(2) 및 (3)의 (라)의 시설설비 및 교구 8)조명과정 가)□□자□□목의 공통시설 나)□□나□□목(1)(2) 및 (3)의 (라)의 시설설비 교구 다)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9)음향과정 가)□□자□□목의 공통시설 나)□□나□□목(1)(2) 및 (3)의 (라)의 시설설비 및 교구 다)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0)성우과정 가)□□자□□목의 공통시설 나)□□나□□목(3)의 (다)의 시설설비 및 교구 11)유선방송전송기술과정 가)시설 ①□□가□□목의 공통 시설 ②기개실 : 60㎡ 이상 나)설비 및 교구 ①영상 및 음향벽조기(MODULATOR) 각 3대 이상 ②영상 및 음향변조기(MODULATOR) 각 3대 이상 ③류너(COMMUNITY SATELLITE, BROADCASTING SATELLITE) 각 1대 ④목호기(DECODER) 1대 이상 ⑤영상분배기(VIDEO DIVIDER AMP) 1대 ⑥음향분배기(AUDEO DIVIDER AMP) 1대 ⑦같라화면발생기(PATTERN GENERATOR) 1대 ⑨레벨메터(신호측정기)2대 이상 ⑩채널혼합기 1대 ⑪채널변환기(SCRAMBLER) 1대 ⑨레벨메터(신호측정기)2대 이상 ⑩채널혼합기 1대 ⑪채널변환기(SCRAMBLER) 1대 ⑨레벨리카(NSCH이상)1대 ②가입자 수신기(CONVERTER) 3대 이상 ⑩과형감시기(WAVEFORM MONITOR) 1대 ①영상위상감시기(VECTOR SCOPE) 1대 다)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	시 설 규 모 및 교 구·설 비 기 준	비고
46.관광	가. 시설 1)강의실: 60㎡ 이상 2)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관광도서 30종이상 2)한국지도(1/500,000), 세계지도 3)고적,명승지 안내도 반별 각 1매 4)반당 녹음기, 환등기, 카메라 각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7.주산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대형주판 2개 이상 2)속도측정 초시계 2개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8.무용일반 (전통무용,현대무용)	가. 시설 1)무용실: 60㎡ 이상 2)탈의실: 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전축, 녹음기 1대 이상 2)대형거울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9.서예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벼루 1인당 1대, 먹가는 도구 1인당 1대 이상 2)서법도서 10종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0.음악	 가. 시설 음악실 9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공통기준 감상용 전축(채널당 출력 20W이상) 1대 이상 2)과정별 기준 가)악기과정 ①□□나□□목(1)의 공통설비 및 교구 ②주요실습용 악기 5대 이상 나)성악과정 ①□□나□□목(1)의 공통설비 및 교구 ②현대성악: 피아노 1대 이상 ③고대성악: 장고, 가야금, 피리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교 습 과 정	시 설 규 모 및 교 구·설 비 기 준	비고
51.미술	가. 시설	
	실습실 : 9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화판 및 화판걸이(이젤)일시수용인원 1인당 1개 이상	
	2)서양화 과정: 석고 및 석고대 10점 이상	
	3)동양화 과정: 벼루, 모포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2.바둑	가. 시설	
	실습실 : 60 m²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바둑판 20조 이상	
	2)바둑해설판 1조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3.만화	가. 시설	
(만화영화)	실습실 :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라이트 박스 1인당 1조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4.꽃꽂이, 꽃기예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괘도 5종 이상	
	2)실습공구 20세트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5.국토개발	가. 시설	
(도시계획,조경,지적)	실습실(강의실겸용) : 60m²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조시계획및 조경과정	
	가)제도실 : 10㎡ 이상	
	나)제도태 : 10조 이상	
	2)지적과정	
	가)기계실 : 20m² 이상	
	나)평판측기 10조 이상	
	다)트랜싯 5조 이상	
	라)레벨 5조 이상	
	마)데오돌라이트 3조 이상	
	바)구석기 2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u>56.</u> 교통	가. 시설	
	실습실(강의실겸용) :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작업대 4조 이상	
	2) 교통량 기록계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교 습 과 정	시 설 규 모 및 교 구·설 비 기 준	비고
57.모델, 연극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나. 시설·설비 및 교구 무대장치, 조명장치, 녹음장치, 확성장치 1조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8.독서실	가. 시설 열람실 9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열람대 1인당 1대 (열람대 넓이는 가로 78㎝이상, 세로 58㎝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9.포장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상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60.속기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속기용 사무기기 또는 컴퓨터 10대 이상(일시수용인원 1인 1대) 2)주변기기 3) 관련소프트웨어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햐
61.전산회계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및 교구 1)전산회계용 사무기기 또는 컴퓨터10대 이상 (일시수용인원 인당1대) 2)주변기기 3)관련 소프트웨어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
62.전자상거래,사회조사,게임 ,캐릭터,정보처리,출판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컴퓨터 10대 이상 (일시수용인원 1인당 1대) 2)주변기기 3)관련소프트웨어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교 습 과 정	시 설 규 모 및 교 구·설 비 기 준	비고
63.텔레마케팅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전화단말기 1대이상 2)헤드셋 10대이상(일시수용인원 1인당1대)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64.애견미용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애견 미용 전용 테이블 1인용 10대 이상 2) 욕조2대 이상 3) 드라이어 10대 이상 (일시수용인원 1인당 1개)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65.직업상담,소비자전문상담,호스피스,병원 코디네이터,컨벤션기획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상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66.장의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염습대 10대 이상 2)수의 (남,여 구분)10세트 3)관 2대 이상 4)실습용마네킹 5개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67.항공승무원	 가. 시설 1) 강의실 30㎡ 이상 2)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기내모형: 실습실 내부에 항공기의 내부모형 15㎡ 이상 2)거울을 갖춘 화장대 10조 이상 3)걸음걸이 연습에 필요한 워킹대(마루판등) 설치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68.로 봊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상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69 통신기기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상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교 습 과 정	시 설 규 모 및 교 구·설 비 기 준	비고
70. 음반	가. 시설 1)장의실 30㎡ 이상 2)실습실 가)녹음조정실 30㎡ 이상 나)녹음스튜디오 3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음향믹서(32채널 이상) 1대 이상 2)Adat Card 1대 이상 3)앰프 1대 이상 4)마이크 프리엠프 1대 이상 5)오디오 컨버터 1대 이상 6)음향 이펙터 1대 이상 7)마이크로폰(녹음용) 1대 이상 8)모니터 엠프 1대 이상 9)녹음프로그램 1개 이상 10)컴퓨터 1대 이상 11)컴퓨터용 오디오 컨버터 1대 이상 12)Adat & HD Record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71. 국악, 실용음악	가. 시설 실습실 : 9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교습과목별 악기 5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72. 마술(매직)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마술 교구 10종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73. 성악	가. 시설 실습실 : 9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음향기기 1대 이상 2)피아노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74. 현대무용	가. 시설 1)실습실: 60㎡ 이상 2)탈의실 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음향기기 1대 이상 2)대형거울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교 습 과 정	시 설 규 모 및 교 구·설 비 기 준	비고
75. 특수교육	가. 시설 개별실 6.6㎡ 이상 또는 집단실 20㎡ 이상 나. 교구 언어치료, 작업치료, 청능훈련, 물리치료, 감각운동, 지각훈련, 심 리행동적응훈련, 보행훈련, 일상생활훈련 등 치료교육 과정별 필 요교구 3종 이상	

【별표5】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시설설비 기준(제6조제2항제3호 관련)

구 분	시설·설비 기준		
강의실 등	가. 강의실 : 230㎡ 이상 나. 보건실 : 33㎡ 이상 다. 휴게실 : 66㎡ 이상(남녀별로 구분 가능) 라. 체육시설(또는 체육장) : 100㎡ 이상(단, 외부 체육장은 학원건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 에 위치하여야 함)		
숙박시설	가. 시설 1) 기숙사 면적(내측간의 면적): 수용예정인원×4㎡ 이상 [다만, 개별 숙소에 세면실 또는 샤워실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5㎡ 이상] 2) 공동 세면실 또는 샤워실 - 개별 숙소에 세면실 또는 샤워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 수용예정인원×0.4㎡ 이상(남・여 구분) 3) 세탁실 남・여 구분)		
	나. 설비 1) 세탁기(수용예정인원을 고려한 수량) 2) 사물함(옷장) 1인당 1개 3) 급수시설(수용예정인원을 고려한 수량) 4)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급식시설	가. 조리실 1) 면적		
	급식 인원수		면적
	50인 이하 51인~100인 101인~150인 151인~200인 201인~250인 251인~300인 301인~600인 601인~900인 901인~1,200인 1,201인~1,500인 1,501인 이상		14㎡ 14㎡+0.14㎡×(급식인원수-50) 21㎡+0.14㎡×(급식인원수-100) 28㎡+0.14㎡×(급식인원수-150) 35㎡+0.14㎡×(급식인원수-250) 42㎡+0.14㎡×(급식인원수-250) 49㎡+0.05㎡×(급식인원수-300) 64㎡+0.04㎡×(급식인원수-600) 76㎡+0.04㎡×(급식인원수-900) 88㎡+0.04㎡×(급식인원수-1,200) 100㎡+0.02㎡×(급식인원수-1,500)
	2) 시설·설비 기준		
	구 분		기 준
	1. 배수설비 청소하기에 쉽도록 적당한 위치에 상당한 크기 및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열설비	매연·검댕	등의 발생으로 조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며, 낙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환기·조명설비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환기시설과 채광시설을 명은 22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세척설비	리종사자	류를 씻을 수 있는 위생적인 세척설비와 조 전용의 위생적인 손씻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방충·방서 등 설비		출입구등에는 벌레 및 쥐를 막을 수 있는 적절를 갖추고, 충분한 크기의 덮개가 있는 폐기물용 남야 한다
	6. 기타 시설·설비	배선대 등	등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구 분	시설·설비 기준			
	3) 기구기준			
급식시설	품목	비고		
	1. 개수대	조리용과 후처리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2. 조리작업대	높이 80cm 내지 90cm로서 급식학생수를 고려한 크기의 것으로 한다.		
	3. 냉장고	급식인원을 고려한 크기의 것으로 한다.		
	4. 식기보관장	급식인원을 고려한 크기의 것으로 한다.		
	5. 조리용구보관장	급식인원을 고려한 크기의 것으로 한다.		
	6. 제반기 또는 밥솥	급식인원을 고려한 크기의 것으로 한다.		
	7. 국솥	급식인원을 고려한 크기의 것으로 한다.		
	8. 조리용구	적정수량의 조리에 필요한 각종 용구를 갖춘다.		
	9. 저울	100kg·10kg 및 1kg용 각 1대를 갖춘다.		
	10. 계량컵	1개 이상을 갖춘다.		
	11. 조리실용 시계·조리용온도계 및 온·습도계	각 1개씩을 갖춘다.		
	12. 조리종사자용 위생복·위생모·위생화 및 마스크	조리종사자별로 각 한벌씩 갖춘다.		
	13. 식품절단기	권장사항		
	14. 식품박피기	권장사항		
	15. 음식물쓰레기 처리설비	권장사항		
	16. 자동세척기	권장사항		
	17. 식품운반용 수레	권장사항		
	18. 세미기	권장사항		
	19. 식기소독기	권장사항		
	20. 배식대	급식인원을 고려한 수량만큼 갖춘다.		
	21. 식판	급식인원을 고려한 수량만큼 갖춘다		
	22. 그 밖에 조리 및 배식에 필요한 기구	급식인원을 고려한 수량만큼 갖춘다		
	나. 식품보관실 시설·설비 기준			
	품목	비고		
	1. 식료품보관용 선반 및 깔개			
	2. 환기설비	환풍기 등을 설치한다.		
	3. 방습시설			
	4. 방충·방서설비			
	5. 배수설비			
6. 조명설비		식품식별에 적합한 밝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7. 온·습도계			
	8. 그 밖에 식료품의 검수·계량에 필요한기기			
	다. 식당 1) 면적: (수용예정인원×1/2×1㎡)에 의하여 산출된 면적 이상 2) 식탁 및 의자: 수용예정인원 1/2이 일시 사용 가능한 수량 3) 급수시설 4)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라. 탈의실 또는 휴게실 1실 이상			

[관련 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8>

- 1.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 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 나. 도서관·박물관 및 과학관
 - 다.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 라.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 마.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 바.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 2. "교습소"란 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
- 3. "개인과외교습자"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의 단독주 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교습료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한다.
- 4.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가. 제1호 각 목에 따른 시설에서 그 설치목적에 따라 행하는 교습행위
 - 나.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
 -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 5. "학습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교습을 받는 자
 - 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
 - 다. 개인과외교습자로부터 교습을 받는 자

[전문개정 2007.12.21]

제2조의2 (학원의 종류) ①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학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교교과교습학원 :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유아 또는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교습하거나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
 - 2. 평생직업교육학원 :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9.22]

제2조의2 (학원의 종류) ① 학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교교과교습학원 :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 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교습하거나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
 - 2. 평생직업교육학원 : 제1호에 따른 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 ② 제1항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3조 (교원의 과외교습 제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소속된 교원(敎員)은 과외교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4조 (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①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이하 "학원설립·운영자"라 한다)는 자율과 창의로 학원을 운영하며,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 적정한 수강료 징수 등을 통한 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평생교육 담당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 ②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는 자(이하 "교습자"라 한다)와 개인과외교습자는 과외교습을 할 때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 적정한 수강료 징수 등을 통한 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교습을 담당하는 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 ③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교습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학원·교습소의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5조 (교육환경의 정화 등) ①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학원이나 교습소의 교육환경과 위생시설을 깨끗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②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 또는 교습자는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소와 가까운 장소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교습소를 설립·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교습소와 가까운 장소에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영업에 관하여 허가·인가 등을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관할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교습소와 가까운 장소의 범위 및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소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6조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①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7조 (조건부 설립등록) ①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수리(受理)할 때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수리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에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8조 (시설기준) 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학원의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7.12.21]

제9조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 6. 제17조제1항에 따라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7.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② 학원설립·운영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 7호의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바꾸어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0조 (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학원설립·운영자는 그 학원을 1개월 이상 휴원(休院)하거나 폐원하려면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1]

第11條 삭제 <1999.1.18>

제12조 (교습과정) 학원의 교습과정은 학원설립·운영자가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3조 (강사 등) ①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② 학원설립·운영자는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교육감은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가 갖추어야 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들의 연수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4조 (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①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교습소는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하여야 한다.
- ③ 교습자의 자격, 교습소의 장소·시설·설비, 학습자의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교습자는 교습소를 1개월 이상 휴소(休所)하거나 폐소하려면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⑤ 제17조제2항에 따라 교습소의 폐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종류의 교습소를 신고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1]

제14조의2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①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료를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在籍) 중인 학생(휴학생은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의 신고를 받으면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③ 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증명서를 교습장소에 게시하거나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가 요청하면 제시하여 한다.
- ④ 개인과외교습자가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신고증명서가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⑤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을 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인과외교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료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 ⑦ 제1항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를 받은 교육감은 개인과외교습장소가 그 교육감의 관할 지역이 아니면 교습장소를 관할하는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⑧ 제17조제3항에 따른 과외교습 중지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 <신설 2008.3.28>

[전문개정 2007.12.21]

제15조 (수강료등) ①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학습자로부터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이하 "수 강료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수강료등은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정하고, 교육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인터넷 등 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③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수강료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하거나 표시·게시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정한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교습소의 수강료등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6조 (지도·감독 등) ① 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하는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에 대하여 시설·설비, 수강료등, 교습에 관한 사항 또는 각종 통계자료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그 시설·설비,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설비의 개선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④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료 등 각종 신고사항을 확인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⑤ 제3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 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7조 (행정처분) ①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 2.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이 제6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3. 제8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開院) 예정일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개원하지 아니한 경우
- 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휴원한 경우
- 6. 등록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한 경우
 - 7.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게시한 수강료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
 - 8.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
 - 9.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② 교육감은 교습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 2.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소를 운영한 경우
 -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③ 교육감은 개인과외교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외교습 중지를 명할 수 있

- 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외교습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8>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 2.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외교습을 한 경우
- 3. 제14조의2제6항에 따른 교습료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07.12.21]

제18조 (수강료등의 반환 등) ①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수강료 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등의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9조 (학원 등에 대한 조치) ① 교육감은 제6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학원이나 교습소를 설립·운영하거나 제17조에 따라 학원의 등록말소 또는 교습소 폐지의 처분을 받거나 교습의 정지처분을 받은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계속하여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학원이나 교습소를 폐쇄하거나 교습 등을 중지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해당 학원이나 교습소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을 제거하거나 학습자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 2. 해당 학원이나 교습소가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시설이거나 제17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 은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문의 부착
 - ② 삭제 <2008.3.28>
 -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0조 (청문)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1. 제17조제1항에 따른 학원의 등록말소
- 2. 제17조제2항에 따른 교습소의 폐지명령

[전문개정 2007.12.21]

제21조 (권한의 위임·위탁 <개정 2007.12.21>) ① 이 법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②삭제 <2001.1.26>

③ 교육감은 제13조제3항에 따른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에 대한 연수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과 관련된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제22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8>

1.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운영한 자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
-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교습소를 설립·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자
- 4.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자
- ② 제3조를 위반하여 과외교습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8>
- ③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의 제거 또는 시설물의 설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을 허락받지 아니하고 제거하거나 못쓰게 만든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8>

[전문개정 2007.12.21]

제23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3.28>

- 1. 제4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 2. 제10조나 제14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3. 제13조제2항에 따른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 4. 삭제 <2008.3.28>
 - 5. 제1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증명서를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아니한 자
 - 6. 제14조의2제6항에 따른 교습료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자
- 7.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강료등을 표시·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수강료 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한 자
 - 8.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 9. 제16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10. 제18조에 따른 수강료등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징수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교육감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하다.
-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7.12.21]

附則 <제4964호,1995.8.4>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6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適用例) 第9條의 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學院의 設立·운영의 登錄을 하는 者부터 적용한다. 第3條 (學院의 登錄者 등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學院의 設立 에 관하여 登錄하거나 認可받은 자는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學院의 設立·운영에 관한 登錄을 한 者로 본다. 第4條 (申告한 課外敎習者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課外 敎習의 申告를 한 者는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敎習所의 申告를 한 者로 본다.

第5條 (처분 등에 관한 經過措置) 附則 第3條 및 第4條의 경우외에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命令·처분·措置 또는 申告·申請등은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第6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하다.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 社會教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2條의 題目 "(私設講習所)"를 "(學院등)"으로 한다.

附則(교육법) <제5069호,1995.12.29>

第1條(施行日)이 法은 1996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등) ①내지 ⑩省略

印學院의設立·운영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3號중 "國民學校"를 "初等學校"로 한다.

12 내지 15 省略

第4條 省略

附則(교육법) <제5272호,1997.1.13>

-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② 및 ③省略
- ④(다른 法律의 改正) 學院의設立·운영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3號증 "開放大學"을 "開放大學·技術大學"으로 한다.

附則(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附則(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5474호,1997.12.24>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9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7條 省略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⑨省略

⑩學院의 設立 운영에 관한 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號 中目 言 "職業訓練基本法에 의한 職業訓練施設" 을 "勤勞者職業訓練促進法에 의한 職業能力 開發訓練施設" 로 한다.

① 및 ②省略

第9條 省略

附則 <제5634호,1999.1.18>

-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 ②(受講料등의 반환 등에 관한 적용례) 第18條의 改正規定은 이 법 施行후 최초로 반환사유가 발생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부칙(도로교통법) <제6392호,2001.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道路交通法에 의한 자동차운전학원

제21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5>생략

<36>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3조제2항, 제14조제4항·제5항 및 제15조제2항중 "敎育部令"을 각각 "敎育人的資源部令"으로 하다.

<37>내지 <79>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6463호,2001.4.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인과외교습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개인과외교습자(제14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학생을 제외한다)는 이 법 시행후 1월 이내에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7194호,2004.3.2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한 자중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장소외의 장소에서 과외교습을 하고 있는 자는 1년 이내에 교습소로 변경신고할 수 있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25>생략

<126>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중 "破産者"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27>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7974호,2006.9.2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7조 및 제23조의 개정 규정 중 표시에 관한 부분은 각각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할교육감과의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교습소와 인접한 장소에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허가·인가 등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교습자의 교습소설립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와 인접한 장소에서 교습소를 설립·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의 규정에 따른다.

④(학원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학원의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도의 조례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⑤(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에 대한 경과조치)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에 대하여는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도의 조례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8483호,2007.5.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1호중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제1항"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8711호,2007.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08> 까지 생략

<10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3조제2항, 제14조제4항·제5항, 제14조의2제2항·제4항 및 제15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 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11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989호.2008.3.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7.7>

제2조 (정의등)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7.7>

- 1. "계열"이라 함은 상호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교습과정의 집합을 말한다.
- 2. "교습과정"이라 함은 학원에서 교습하는 교습과목의 집합을 말한다.
- 3. "교습과목"이라 함은 교습하는 단위 교과를 말한다.
- 4. "독서실"이라 함은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을 말한다.

②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이상"이라 함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인(「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1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7.7, 2007.3.23>

제2조의2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학습자의 주거지
- 2.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본조신설 2004.6.5]

제3조 (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습행위<개정 2001.7.7>) ①법 제2조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습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1.1.29, 2001.7.7, 2008.2.29>

- 1. 근로청소년에 대한 교습행위
- 2.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교습행위
- 3. 기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 ②삭제<2001.7.7>

제3조의2 (교습과정 분류 등) ①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②교습과정의 등록은 교습내용이 별표 1에 따른 분류와 가장 유사하거나 그 교습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교습과정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③학원설립·운영자는 한 학원에서 2 이상의 교습과정을 등록·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3.23]

제4조 (교육환경의 정화등) ①삭제 <2007.3.23>

②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이하 "유해업소"라 한다)의 종류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당구장, 만화가게 및「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를 제외한다)을 갖춘 영업소를 말한다. <개정 2004.6.5, 2006.10.27>

③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교과교습학원(교습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

다)은 유해업소와 동일한 건축물안에 있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연면적 1천650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건축물안에 학원과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다. <개정 1999.5.10, 2007.3.23>

- 1.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경우
- 2.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
- ④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의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은 협의에 앞서 미리 학교보건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①삭제<1999.5.10>

②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설립·운영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원칙 및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2001.1.29, 2007.3.23, 2008.2.29>

- 1. 설립자의 인적사항
- 2. 교습과정
- 3. 강사명단
- 4. 수강료(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경우에는 숙박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용료
- 5. 시설·설비
- 6. 개강 예정 연월일
- ③제2항의 원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학원의 명칭 및 설립목적과 위치에 관한 사항
- 2. 수강자의 교습과정별 정원에 관한 사항
- 3. 교습과정 및 교습일시에 관한 사항
- 4. 삭제 <1999.5.10>
- 5. 과정 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 6. 교습기간 및 휴강일에 관한 사항
- 7. 수강료 또는 이용료에 관한 사항
- 8. 기타 학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④교습과정이 이론교습과목과 실험·실습 또는 실기교습과목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학원을 설립할 수 없다.
- ⑤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 설립·운영등록신청의 내용이 시설기준과 교육환경에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 ⑥교육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신청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 령이 정하는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제5조의2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별표 1 학원의 교습과정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보통교과계열에 속하는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 일 것
- 2.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에서 정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한 교습제한 기준을 충족할 것
- 3. 숙박시설을 학원의 시설로 하고, 학원과 동일한 건물이나 학원건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곳에 설치하며, 학원 수강생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4. 숙박시설에 급식시설과 수강생의 안전 및 보건·위생에 적합한 환경과 시설·설비 등을 갖출 것
- 5. 숙박시설에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받은 자(이하 "영양사"라 한다)와 제12 조제2항에 따른 강사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배치할 것

②제1항에 따른 숙박시설의 위치, 환경기준, 시설·설비기준,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적 여건과 학원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시·도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3.23]

제6조 (학원 설립·운영의 조건부등록)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 설립·운영의 조건부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원칙 및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②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등록신청의 내용이 교육환경에 적합하고 시설기준을 갖출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이내의 기간내에 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하여 등록을 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조건부 기간내에 시설 및 설비를 갖출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학원 설립·운영의 조건부등록을 받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개강예정일 10일이전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교육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시설 및 설비의 확보여부를 조사·확인하고 등록의 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등록사항의 변경)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학원의 위치 또는 교습과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개정 1999.5.10>

②학원의 설립·운영을 등록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하여야 할 사항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한 사항을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의 절차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은 이를 변경등록 으로 본다.

제7조의2 삭제 <2007.3.23>

제8조 삭제 <2007.3.23>

제9조 삭제 <2007.3.23>

제10조 (일시수용능력인원초과 교습의 금지등<개정 1999.5.10>) ①학원의 설립·운영자는 같은 시간에 그 시설의 일시수용능력을 초과하여 교습을 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5.10>

②삭제<1999.5.1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험·실습 또는 실기를 필요로 하는 학원에서 같은 교습과목을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교습받을 수 있는 학습자의 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 삭제 <1999.5.10>

제12조 (강사) ①학원의 설립·운영자는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와 학습자의 생활지도에 필요한 인원을 학습자의 학습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 ②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은 별표2와<%생략:별표2%> 같다.
- ③삭제<1999.5.10>

제13조 (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를 하고 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교습소 설립·운영신고서에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 1. 신고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및 직업
- 2. 신고자의 학력 및 경력
- 3.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 4. 교습과목
- 5. 교습료
- 6.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이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교육과학 기술부령이 정하는 교습소설립·운영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제14조 (교습소 신고사항의 변경)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은 교습자, 교습소의 위치 및 교습과목의 변경으로 한다.

②교습소의 설립·운영을 신고한 자가 신고사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하여야 할 사항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한 사항을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의 절차등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신고는 이를 변경신고로 본다.

제15조 (교습자의 자격) ①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자의 자격은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교습소에는 강사를 둘 수 없다. 다만, 교습자가 출산 또는 질병등의 사유로 직접 교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다.

제16조 (교습소의 장소등) ①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의 장소·시설·설비 및 학습자의 수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5.10, 2007.3.23>

- 1. 삭제 <2007.3.23>
- 2. 교습소에서 같은 시간에 교습받는 인원은 9인(피아노 교습의 경우에는 5인)이하일 것
- 3. 교습소 강의실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은 0.3인이하일 것
- ②삭제<1999.5.10>

제16조의2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①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6.5, 2008.2.29>

- 1. 신고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2. 신고자의 학력·전공·자격 및 경력
- 3. 교습과목

- 4. 교습료
- 5. 교습장소

②개인과외교습자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14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변경신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6.5, 2008.2.29>
[본조신설 2001.7.7]

제17조 (수강료조정위원회) ①법 제14조의2제6항 및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이하 "수강료등"이라 한다)등의 조정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4.6.5, 2007.3.23>

②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회는 지역교육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른 지역교육청을 말한다)별로 설치하되, 구체적인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3.23>

- ③삭제 <2007.3.23>
- ④삭제 <2007.3.23>
- ⑤삭제 <2007.3.23>

제18조 (수강료등의 징수·감면 및 반환등) ①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당해수강자 또는 학습장소 사용자로부터 수강료등을 징수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 ②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5.10>
- 1.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 령을 받은 경우
 - 2.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사용을 포기한 경우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3의 반환기준에 의하여 수강료등을 반환사유발생일부터 5일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2007.3.23>
 - 1. 삭제 <2007.3.23>
 - 2. 삭제 <2007.3.23>

④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당해 학원 또는 교습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수강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19조 삭제 <1997.12.31>

제20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교육감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교육장에 게 위임한다. <개정 1999.5.10, 2001.7.7, 2007.3.23>

- 1.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 2.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및 변경 등록의 수리
- 3.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 설립·운영의 조건부등록의 수리 및 조건부 등록의 말소
- 4.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휴원 및 폐원에 관한 신고의 수리
- 5.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 설립·운영에 관한 신고의 수리
- 5의2.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의 휴소 및 폐소에 관한 신고의 수리

5의3.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의 신고의 수리 및 개인과외교습 자의 변경신고의 수리 등

5의4. 법 제14조의2제6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른 수강료·교습료에 대한 조정명령

- 6. 법 제16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지도·감독
- 7.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행정처분
- 8.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교습소의 폐쇄 등을 위한 조치 및 과외교습의 중지명령
- 9.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 10.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 11. 제7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통보의 접수
- ②삭제<2001.6.29>
- ③교육감은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에 대한 연수 및 연수와 관련된 조사·연구등의 업무를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에 위탁한다.

제2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교육감은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 및 납부기일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교육감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부칙 <제14883호,1995.12.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교습과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등록된 학원의 교습과정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교습과 정중 종전의 교습과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습과정으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③(강사등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등록된 학원에서 교습하는 강사 및 신고한 과외교 습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5조에 의한 별표 2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교육법시행령) <제14920호,1996.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학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의 개정등)

- ①내지 ⑦생략
- ⑧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⑨내지 <32>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94호,1999.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58>생략

<59>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제5조제2항 본문·제6항, 제6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본문·제2항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60>내지 <152>생략

부칙(도로교통법시행령) <제17260호,2001.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30제곱미터(자동차운전에 관한 내용을 교습하는 학원은 60제곱미터)"를 "30제곱미터"로 한다.

제20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2의 구분란중 "일반학원(자동차운전에 관한 내용을 교습하는 학원을 제외한다)"을 "일반학원"으로 하고, 동표의 자동차운전에 관한 내용을 교습하는 학원란을 삭제한다.

부칙 <제17296호,2001.7.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4호의 과세자료명란의 가목 및 나목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각각 "학원의설립·운영 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②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4항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③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를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④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제8항 본문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⑤평생교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를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로 한다.

⑥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6조"를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6조"로 한다.

⑦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9조제2항제4호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⑧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9. 무도학원업의 영업의 범위란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⑨아동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별표 4의 직업훈련교사의 자격기준란 제2호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⑩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①전염병예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7호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②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2호 나목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을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한다.

[3]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호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에 갈음하여 이 영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409호,2004.6.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717호,2006.10.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설비제공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제19953호.2007.3.23>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수강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발생하는 반환사유 부터 적용하다.

부칙(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0003호,2007.4.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1호중 "실업계"를 "전문계"로 한다. ⑨내지 ⑫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1> 까지 생략

<6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항, 제6조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63> 부터 <102> 까지 생략

별표1 학원의교습과정[제3조의2제1항관련]

별표2 학원강사의자격기준[제12조제2항관련]

별표3 수강료반환기준[제18조제3항관련]

[별표 1] <개정 2007.3.23>

학원의 교습과정(제3조의2제1항 관련)

종류	분야	계열	교 습 과 정		
	입시·검정	n E =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		
	및 보습	보통교과	로서 예체능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		
	국제화	외국어	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원고고리			실용외국어		
학교교과	예능	예능	음악, 미술, 무용		
교습학원	독서실		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巨人つり	하는 시설)	E스취그 그이키기세 소리도 그리 미 키크그이 취드		
	특수교육	특수교육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 및 치료교육 활동 기타 법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교습대상으로		
	기 타	기 타	교습을 하거나 같은 호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교습하		
	7 4	7 4	는 학원		
			□드 막천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		
			자,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산업기반기술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		
			관리		
		산업응용기술	디자인, 이·미용, 식음료품, 포장, 인쇄, 사진, 피아		
			노조율		
		산업서비스	속기,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		
	직업기술 -		벤션기획, 소비자전문상담, 텔레마케팅		
	역합기물	일반서비스	애견미용,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 병원코디네		
			이터(coordinator)		
 평생직업		컴퓨터	컴퓨터, 게임, 로봇, 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		
교육학원			프트웨어		
3 1 -1 -1		문화관광	출판, 영상,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character), 관광		
		간호보조기술 	간호조무사		
		경영·사무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펜글씨, 부기,		
		관리	주산, 속셈, 속독		
	국제화	국제	성인대상 어학, 통역, 번역		
	인문사회	인문사회	대학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성인고시		
	기 예		국악, 전통무용, 서예, 꽃꽂이, 꽃기예, 만화, 연극,		
			모델, 화술, 마술(매직), 실용음악, 성악, 현대무용,		
			바둑, 웅변		
	독서실	학교교	과교습학원 교습과정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별표 2] <개정 2004.6.5>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제12조제2항관련)

구 분	자 격 기 준
일 반 학 원	1.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
	2.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술사·기
	능장·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능사
	의 자격증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5.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로서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교
	육감이 인정하는 자
	6.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
	는 자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전국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8.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
	다) 등 전통공예 또는 예능의 기·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9.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
	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체류자격이
	있거나 동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외의 활동허가를 받은 자

[별표 3] <신설 2007.3.23> <u>수강료 반환기준(제18</u>조제3항 관련)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18조제2형 제2호의 의한 경우	}제1호 및 반환사유에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 산한 금액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의한 경우	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을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교습개시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刊	고]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 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 다.

대전광역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8. 7. 22 교육사회위원회

I.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6. 23 대전광역시교육감

나. 회 부 일 자 : 2008. 6. 24

다. 상 정 일 자 : 제17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2008. 7.22)

상정, 질의, 심사, 수정가결

II.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교육국장 강진수)

1. 제안이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개 정에 따라 상위 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규정 신설함(안 제2조).

-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1인당 의료실비 배상금액 3천만원이상)
- 학원·교습소 수강생들에 대한 체벌금지 등 인권보호 규정 신설

- 나. 학원시설 일반적인 기준 신설함(안 제3조).
- 다. 학원의 단위시설 기준 등 신설함(안 제4조).
- 강의실 일시수용인원 상향조정 : 1m²당 1.2인 → 1m²당 1인
- 열람실 및 실험·실습실의 단위면적 기준 : 열람실 60㎡이상, 1㎡당 수용인원 0.8인, 조석의 남녀별 구분 배열, 실험·실습실 45㎡이상
- 학원의 환경기준 등 신설 : 인공조명 300룩스 이상 등
-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기준 마련.
- 라. 학원 교습과정별 시설·설비 기준 신설함(안 제5조).
- 마.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기준 설정함(안 제6조).
- 강의실 230m² 이상, 보건실 33m² 이상, 체육시설 100m² 이상 등
- 숙박시설의 위치를 강의실이 속해 있는 건물로부터 직선거리300m 이내, 생활지도 담당인력 1인 이상 배치.
- 급식시설은 영양사 1인 배치..
- 바.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을 제한함(안 제7조).
-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 등록 심의위원회"의 시의를 거쳐 제한할 수 있고, 세부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사. 교습과정별 일시수용능력 인원수 산정을 구체화함(안 제8조).
- 아. 교육장이 수강료 등을 조정할 경우 학원 등으로부터 관계 증빙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12조).

Ⅲ. 검토의견 (전문위원 : 안문환)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 안 제2조에 학원설립 운영자 등에게 수강생들의 생명·신체상 의 손해발생에 대비한 배상조치 의무화에 따라 배상금액의 최저한도를 정하고,
- 안 제3조 내지 제4조는 학원의 교육 및 보건위생환경 개선을 위해 일반 및 단위시설 에 대한 기준을 정하였으며,
- 안 제5조에는 학원 교습과정별 시설·설비 기준을 정하고,
- 안 제6조 내지 제7조는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 의 강의실, 보건실, 체육시설, 급식시설 등에 대한 등록기준 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교육감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8조는 실험·실습·실기를 요하는 학원 중 강의실과 실습 실을 동시에 사용하는 학원의 일시수용능력 인원 산정방법 을 구체화 하였으며,
- 안 제12조는 수강료 등의 금액을 시행일 10일전까지 관할 교육장에게 통보토록 함.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 등을 통하여 학원 등의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 하였다고는 보아지나, 교육의 주체인 학생 및 학부모의 이익도 반영해야 할 것으로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일부조항의 경우는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사료됨.
- 첫째, 안 제2조에 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규정을 신설하

여 학원의 부담을 증가시켰으나, 수강생의 생명·신체상의 손해발생에 대비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볼 때,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이상"의 규정의 신설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겠으며,

- 둘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학원수강의 실수요자인 학생 및 학부모, 학원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추진 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아지는 만큼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 셋째, 안 제13조 제3호의 규정은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구체 적인 내용이 없음과 동 규정을 편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감안할 때 좀더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음.

Ⅳ. **질 의 요 지**: 생 략

V.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V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호 364

제안연월일: 2008. 7.22. 제 안 자: 교육시회위원장

1. 수정이유

학원·교습소 수강생들의 생명과 신체상의 손해발생시 적극적인 보호 및 배상을 위해 보험 등의 가입금액을 상향조정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2조 제1항에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단, 교습소 의 경우 5억원 이상)을 신설함. 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전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학원의 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①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교습소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 등에의 가입 금액은 사망, 상해, 후유장애 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 1.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단, 1인당 의료실비 배상금액은 3천만원 이상)
- 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단, 교습소의 경우 5억원 이상) ② 내지 ⑥(전부개정안과 같음)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소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 등에의 가입금액은 사망, 상해, 후유장애 등에 대하여 1	제2조(학원의 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①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교습소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 등에의 가입금액은 사망, 상해, 후유장애 등에 대하여는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1.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단, 1인당의료실비 배상금액은 3천만원 이상) 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단, 교습소의 경우 5억원 이상)
②내지 ⑥(생략)	②내지 ⑥(전부개정안과 같음)